

수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71783(본소), 2022나71882(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 물품인도]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침반, 담당변호사 나현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현삼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5. 12.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18가단540298(본소), 2021가단 536350(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6,41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40%의 합유지분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위 2)항 기재 각 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 보관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40%, 피고에게 60%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1~20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경매분할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2)항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1~20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음반 등’이라 한다)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 보관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40%, 피고에게 60%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사건 음반 등이 조합재산이 아니라 피고 소유 재산이라고 보는 근거를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의 나. 2) 나)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총 1억 원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음반 등이 조합재산에 포함되었다면 총 조합재산 중에서 원고의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5% [= 1억 원 ÷ (1억 원 + 2.5억 원)]이다. 사업계획서(갑 제17, 30호증) 기재 내용 중 “1억 투자 시 ⇒ 30%(KYJ)!” 부분도 위 수치에 가깝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7. 4. 3.경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추가로 5,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총 1억 원을 투자하였을 무렵 원고의 지분율을 당초의 25%에서 40%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위 최종 지분율 40%는 앞서 계산한 28.5%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오히려 이 사건 음반 등이 조합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총 조합재산 중에서 원고의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38.4% [= 1억 원 ÷ (1억 원 + 1.6억 원)]에 가깝다.

“1억 투자 시”라는 표현에 비추어 보면, 30%나 32%의 지분율은 원고가 실제로 총 1억 원을 투자하기 이전에 이를 가정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갑 제30호증(사업계획서)을 제출하면서, 위 “1억 투자 시 ⇒ 30%(KYJ)!” 부분 아래에 “L, 32% check!”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3.28. P사장 65%, Q실장 35% OK”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가 2017. 1.경 최초 협의 이후 지분율에 관하여 몇 차례 협의를 이어 가다가 2017. 3. 28.경 원고의 지분율을 35%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원고가 2017. 4. 3. 5,000만 원을 추가 입금함으로써 총 1억 원을 출자하기 이전의 것이다. 한편 원고가 총 1억 5,000만 원을 출자했을 때의 지분율 40%는 원고가 주장하는 몇 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서 살펴본 내용들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당초 원고가 총 1억 원 이상 출자할 경우 피고도 이 사건 음반 등을 출자하기로 하되, 원고의 지분율은 원고가 총 1억 5,000만 원을 출자할 경우 40%로, 총 1억 원을 출자할 경우 30%(원고의 주장으로는 이후 32% 및 35%로 변경되었다)로 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원고가 총 1억 원을 출자한 시점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음반 등을 출자하지 않는 대신 원고의 지분율을 40%로 하기로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총 1억 원을 출자하고도 총 1억 5,000만 원 출자를

전제로 한 40%의 지분율을 인정받게 된 이유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음반 등을 조합재산으로 출자하지 않고 피고 개인 소유인 상태에서 이 사건 카페의 영업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출자했을 때를 상정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이면에 이 사건 음반 등을 배치할 위치를 그림으로 표시하였다는 사실(갑 제30호증)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진, 판사 전용수, 판사 박수미

목 록

순번	품목	수량
1	CD(컴팩트 디스크)	2,000여 장
2	LP(레코드)	1,000여 장
3	DVD(디지털 비디오)	700여 장
4	비디오 테이프	150여 장
5	알텍 스피커	1조
6	알텍 앰프	1개
7	오디오 14채널 믹서	1개
8	소니 302es 시디재생기	2개
9	NAD 시디재생기	1개
10	인켈 시디재생기	1개
11	KLH 스피커	1개
12	오디오전용 컴퓨터	1개
13	어드밴스 앰프	1개
14	NAD 앰프	1개
15	히타치 비디오	1개
16	테크닉스 턴테이블	1개
17	브라운관 아이오와TV	1개
18	마살 기타앰프	1개
19	페르난데스 기타	1개
20	카와사미 기타	1개
21	수제 탁자와 의자	2개
22	수제 바 의자	5개
23	블루투스 수신기	1개

끝.

